

조인셋 윤리규범

2010. 7. 20



조인셋(주)

조인셋은 창조적인 도전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우량기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실천을 다짐 한다.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조인셋은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 존중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에 대한 응대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고객으로부터 A/S실시 요청, 정당한 교환 요청이나 반품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응답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1)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2)고객의 재산을 내 것처럼 보호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가치의 제공

끊임없이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항상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직위·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 (1)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 임차·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 (2) 상위자는 그 조직 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 용무 등을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정직·공정한 보고

사실과 다르게 문서·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 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

3.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 회피

- (1)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담당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2)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4. 자기계발

- (1)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힘쓴다.
- (2)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한다.

제 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5. 품위유지

- (1)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 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직장내 성희롱 방지

- (1)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항상 조심 하여야 한다.
- (2)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회사 내에서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인격이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 3장 공정한 경쟁 (경쟁자)

모든 사업활동에서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

- (1)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
- (2) 정당하게 입수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 (1) 경쟁사가 보유한 모든 분야의 유·무형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침해 하지 않는다.
- (2)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해 비방하지 않는다.

3. 담합금지

- (1)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지역배분 등에 대해 담합 하지 않는다.
- (2) 동종거래처들과 부당한 협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4.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제 4장 공정한 거래 (협력업체)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2. 깨끗한 거래질서의 유지

- (1) 거래처로부터 금품·용역·향응·기타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2)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지연·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3)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공정한 거래와 평가

- (1))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 (2) 회사가 명백히 잘못하여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3)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제 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1. 능력과 업적에 의한 대우

- (1) 임직원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연령, 출신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 (2)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2. 건전한 의사표시의 보장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3. 건강·안전에 대한 책임

- (1)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위험물·유해물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4. 인재의 육성

-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며 활성화시킨다.
- (2)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반사회적 기업활동 금지

밀수, 부동산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합리적 사업전개

- (1)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2)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3. 주주 이익의 보호

- (1)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 (2)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4. 사회발전에 기여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5. 환경의 보호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금지하며, 환경보호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